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984

발의연월일 : 2026. 5. 15.

발 의 자 : 조지연・김은혜・김승수 이달희・김위상・조은희 임이자・김용태・김상훈 김대식・서일준・한지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조・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을 받지 않은 살생물물질에 대한 판매・증여, 판매・증여 목적으로 진열・보관・저장한 사람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또한, 회수, 폐기 등 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수입・판매・유통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 가운데 포장・광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 이러한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포장・광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하는 경

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법률 제 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장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의2(포상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2조의2(포상금) ① ---------- ---------- ---------- ---------- ----------.
<신 설>	1.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장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1.·2. (생 략)	3.·4.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